

가 집 행 면 제 선 고 신 청 서

사 건 2000가단00 대여금

원 고 000

피 고 ◇◇◇

위 사건에 대하여 가집행 선고가 있었으나, 피고는 이 사건의 성질상 판결확정 전에 집행을 받기에는 부당하고, 항소심에서 번복된다 해도 회복할 수 없는 불이 익이 예상되므로 가집행을 면제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.

2000. 0. 0.

위 피고 🛇 🛇 (서명 또는 날인)

○○지방법원 귀중

제출법원	소송계속법원				www.klac.or.	12
제출부수	신청서 1부	관련법규	민사소송법	제213조	제2항	
기 타	·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제공하고 가집행을 면제				담보로	

●●●분류표시 : 민사소송 >> 소송절차 >> 송달 및 재판